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10. 18. ~ 10. 29. 【토·일 제외, 10일간】

나. 감사인원 : 23명(공인회계사 등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분야별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조직 인사·복무	예산·회계	산단· 연구비	입시·학사	시설·물품	계
지적사항	17	11	5	8	4	4	49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개인부담 소송경비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p> <p>○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2019. 5. 30. 가톨릭대학교 A이(가) B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3,30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개인부담 소송경비 법인회계 집행 내역”과 같이 2019. 5. 30.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민사소송 관련 경비 6건 합계 31,940,82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B은(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자 '22.2.22. 관련 소송경비 31,940,820원을 전액 법인회계로 반납 조치함</p>	○ 경고(4명)

【붙임】

개인부담 민사소송 관련 경비 법인회계 집행 내역

(단위 : 원)

순	지급일	적요	원고	피고	집행액	비고
1	'19-05-30	-	-	-	3,300,000	-
2	'20.08.26	-	-	-	22,064,826	-
3	'20.09.10	-	-	-	3,300,000	-
4	'20.09.10	-	-	-	189,400	-
5	'20.11.30	-	-	-	3,000,000	-
6	'21.10.15	-	-	-	86,600	-
합계					31,940,82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학교법인 규정 개정 절차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 4호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 사무처 제규정 관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을 제외한 규정 및 규칙, 세칙, 내규는 규정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이사장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2016. 10. 1.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위임 전결 규칙」을 C 결재만으로 개정·시행하는 등 【붙임】 “이사장 승인 없는 학교법인 규정 개정 현황”과 같이 2016. 10.부터 2021. 3.까지 총 17건의 법인사무처 소관 규정을 이사장 승인 없이 C 결재만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음 - 또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장의 권한 사항인 ‘교직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임면, 겸직 등)’을 법인 C 전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p>*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위임 전결 규정 제9조 제4항 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 통보 - 향후, 법인 규정 개정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자체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붙임】

이사장 승인 없는 학교법인 규정 개정 현황

순	규정명	주요 내용	개정일
1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위임전결규칙	-	'16.10.01.
2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경조사에 관한 내규	-	'16.12.01.
3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직원 인사규칙	-	'16.12.01.
4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투자심의 운영세칙	-	'18.03.01.
5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	'19.07.01.
6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취업규칙	-	'19.07.11.
7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투자심의 운영세칙	-	'19.10.01.
8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	'19.11.16.
9	의료(연구)장비 계약에 관한 시행 세칙		'19.11.16.
10	시설공사 계약 이행에 관한 시행 세칙		'19.11.16.
11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시행 세칙		'19.11.16.
12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위임 전결 규정		-
13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교직원 출장비 지급 내규	-	'20.01.16.
14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내부 감사 규정	-	'20.01.16.
15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건설공사 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	-	'20.01.16.
16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취업규칙	-	'20.06.01.
17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사무처 취업규칙	-	'21.03.1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p>입찰참가 자격 중복 제한</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제4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목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p> <p>-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는 2021. 6. 14.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① 입찰</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법인 가톨릭학원】</p> <p>○ 경징계(4명)</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center;">【가톨릭중앙의료원】</p> <p>○ 경징계(1명)</p> <p>○ 경고(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공고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매출액 4천억원 이상,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허가병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약품 납품실적 단일계약 연 1천억 원 이상인 업체, ③ '3,300㎡' 이상의 의약품 물류창고와 냉장 배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지분구조 100% 자회사 포함), ④ ㄴㄴ(주) 기업신용인증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등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중복(① 실적&② 실적 중복, ①·② 실적&③ 시공능력 중복) 제한하여 최초입찰, 재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와(과) 수의계약 체결(계약기간 : 2021. 9. 1. ~ 2026. 8. 31.(5년), 품목별 단가계약, 연 예상금액 4,693억원)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2020. 8. 6. 가톨릭중앙의료원 진료재료 및 의료 소모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허가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5곳에서 본 용역 관련 실적을 3년 이상 수행한 업체, ② 최근 3년간 매출 규모 연 2천억원 이상인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 등급 A- 이상인 업체' 등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중복(① 실적&② 실적 중복) 제한하여 최초입찰, 재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와(과) 수의계약 체결(계약기간 : 2020. 9. 1. ~ 2025. 8. 31.(5년), 품목별 단가계약, 예정금액 3,300억원)한 사실이 있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p>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p> <p>○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별표 2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부속병원은 대학의 부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도,</p> <p>-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는 2016학년도 교육용기본재산인 대학 부속병원 시설의 일부를 법인수익사업체(5곳, 19,416㎡)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기세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합계 106,067,095원을 부속병원이 부담하게 하는 등</p> <p>【붙임】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인 대학 부속병원 시설의 일부를 법인수익사업체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기세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합계 481,147,716원을 부속병원이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시정</p> <p>- 교육용기본재산을 법인수익사업체로 사용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합계 481,147,716원을 관련회계로 전출하기 바람</p> <p>○ 통보</p> <p>- 2021학년도 관리비를 책정하여 관련회계로 전출하고 향후,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체 관리비는 관련회계에서 집행하기 바람</p>

【붙임】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현황

연도	구분	장례식장 면적	연 관리비
2016	-	7,964m ²	43,507,332
	-	3,470m ²	18,956,610
	-	3,077m ²	16,807,138
	-	3,643m ²	19,901,709
	-	1,262m ²	6,894,306
	소 계		
2017	-	7,964m ²	43,507,332
	-	3,570m ²	19,503,347
	-	1,400m ²	7,649,730
	-	3,643m ²	19,901,709
	-	1,262m ²	6,894,306
	소 계		
2018	-	7,664m ²	43,507,332
	-	3,470m ²	18,956,610
	-	1,442m ²	7,877,646
	-	3,643m ²	19,901,709
	-	1,262m ²	6,894,306
	소 계		
2019	-	7,664m ²	43,507,332
	-	3,470m ²	18,956,610
	-	1,442m ²	7,877,646
	-	3,643m ²	19,901,709
	소 계		
2020	-	7,664m ²	43,507,332
	-	3,470m ²	18,956,610
	-	1,442m ²	7,877,646
	-	3,643m ²	19,901,709
	소 계		
합 계			481,147,71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p>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2019. 12. 31. △△와(과) “ㄱ 공사(계약금액 106,007,000천원, 공사기간 ‘20.1.1.~’22.2.28.)”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에 전기공사(11,230,505천원) 및 통신공사(7,227,627천원)를 포함하여 발주·계약하는 등 【붙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현황”과 같이 위 “ㄱ 공사” 등 총 2건(계약금액 합계 112,222,000천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 발주·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li style="padding-left: 20px;"><별도조치> ○ 고발

【붙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미분리 공사금액		계약업체 (대표명)	계약담당자 (팀장)
						전기	통신		
1	성의교정	-	2019.12.31.	2020.1.1. ~ 2022.2.28.	106,007	11,231	7,228	-	-
2	의료원	-	2018.11.29.	2018.12.1. ~ 2019.4.30.	6,215	518	76	-	-
합계			-	-	112,222	11,749	7,304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법인카드 사용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3. 11. 20.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단위부서 운영보조비 지급내규」 제9조에 따르면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골프장 및 유흥업소등, 지불시간이 심야시간 혹은 휴일이거나, 사용처가 근무지 인근이 아닌 개인주거지 인근이나 타지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중앙의료원 D은(는) 2018. 4. 7. 유흥주점 ▷▷에서 연구비(발전기금) 카드로 850,000원을 결제하는 등 【붙임】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같이 2018. 4. 부터 2020. 7.까지 위 D 등 4개 병원 교직원 9명은 유흥업소 ▷▷ 등 20개 업소에서 법인카드[연구비(발전기금), 연구비(의국운영비), 복리후생비]로 총 71차례에 걸쳐 합계 61,51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p>	<p>○ 중징계(1명)</p> <p>○ 경징계(6명)</p> <p>○ 경고(2명)</p> <p>○ 시정(회수)</p> <p>-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합계 61,51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p>

【붙임】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원)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비고	
-	-	-	1	2018.4.7.	토	00:36:01	-	850,000	연구비(발전기금)
-	-	-	2	2018.4.19.	목	23:46:44	-	300,000	"
-	-	-	3	2018.5.16.	수	01:01:24	-	650,000	"
-	-	-	4	2018.5.29.	화	23:46:58	-	650,000	"
-	-	-	5	2018.7.3.	화	00:20:54	-	350,000	"
-	-	-	6	2018.11.29.	목	00:06:35	-	700,000	"
-	-	-	7	2019.1.4.	금	01:35:56	-	1,050,000	"
-	-	-	8	2019.1.14.	월	23:41:20	-	700,000	"
-	-	-	9	2019.2.27.	수	01:28:19	-	1,400,000	"
-	-	-	10	2019.2.27.	수	01:28:43	-	600,000	"
-	-	-	11	2019.3.6.	수	02:58:19	-	830,000	"
-	-	-	12	2019.3.21.	목	23:10:59	-	1,100,000	"
-	-	-	13	2019.4.30.	화	00:04:17	-	1,000,000	"
-	-	-	14	2019.5.1.	수	00:47:59	-	400,000	"
-	-	-	15	2019.5.9.	목	00:41:42	-	1,000,000	"
-	-	-	16	2019.5.9.	목	23:42:22	-	290,000	"
-	-	-	17	2019.5.24.	금	00:46:22	-	1,000,000	"
-	-	-	18	2019.6.11.	화	00:38:06	-	1,000,000	"
-	-	-	19	2019.6.25.	화	20:20:09	-	750,000	"
-	-	-	20	2019.6.29.	토	01:19:03	-	1,100,000	"
-	-	-	21	2019.7.10.	수	00:06:36	-	1,050,000	"
-	-	-	22	2019.7.12.	금	23:31:53	-	1,100,000	"
-	-	-	23	2019.8.1.	목	00:35:02	-	1,050,000	"
-	-	-	24	2019.8.13.	화	00:49:19	-	750,000	"
-	-	-	25	2019.8.20.	화	00:04:49	-	400,000	"
-	-	-	26	2019.8.22.	목	21:39:00	-	700,000	"
-	-	-	27	2019.9.3.	화	00:57:44	-	1,540,000	"
-	-	-	28	2019.9.4.	수	23:55:41	-	770,000	"
-	-	-	29	2019.9.5.	목	01:09:34	-	890,000	"
-	-	-	30	2019.9.11.	수	02:50:47	-	770,000	"
-	-	-	31	2019.9.17.	화	00:03:13	-	770,000	"
-	-	-	32	2019.10.4.	금	22:28:54	-	770,000	"
-	-	-	33	2019.10.4.	금	23:59:13	-	500,000	"
-	-	-	34	2019.10.23.	수	21:45:03	-	800,000	"
-	-	-	35	2019.10.23.	수	21:44:40	-	800,000	"
-	-	-	36	2019.11.15.	금	00:12:35	-	770,000	"
-	-	-	37	2019.11.20.	수	23:00:35	-	880,000	"
-	-	-	38	2019.11.20.	수	23:01:04	-	880,000	"
-	-	-	39	2019.11.27.	수	23:40:31	-	440,000	"
-	-	-	40	2019.12.5.	목	21:52:52	-	1,000,000	"
-	-	-	41	2019.12.12.	목	21:13:53	-	800,000	"
-	-	-	42	2019.12.12.	목	21:16:17	-	800,000	"
-	-	-	43	2019.12.13.	금	23:05:42	-	600,000	"
-	-	-	44	2020.1.16.	목	22:50:53	-	1,550,000	"
-	-	-	45	2020.2.13.	목	20:57:26	-	770,000	"
-	-	-	46	2020.2.19.	수	23:26:04	-	770,000	"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비고	
		47	2020.2.26.	수	21:37:01	-	1,600,000	"	
		48	2020.2.26.	수	21:37:23	-	400,000	연구비(의국운영비)	
		49	2020.3.10.	화	00:17:07	-	1,850,000	연구비(발전기금)	
		50	2020.3.11.	수	20:42:04	-	2,000,000	"	
		51	2020.3.31.	화	23:53:50	-	770,000	"	
		52	2020.4.24.	금	23:54:12	-	1,250,000	"	
		53	2020.6.9.	화	22:44:47	-	1,650,000	"	
		54	2020.6.11.	목	20:09:13	-	2,000,000	"	
		55	2020.6.11.	목	21:21:40	-	2,000,000	"	
		소계						51,160,000	
	-	1	2020.7.6.	월	23:13:24	-	1,650,000	연구비(발전기금)	
		소계						1,650,000	
	-	1	2019.12.13.	금	00:39:03	-	1,420,000	연구비(의국운영비)	
		소계						1,420,000	
	-	1	2019.11.20.	수	19:27:44	-	270,000	연구비(의국운영비)	
		2	2020.3.24.	화	20:58:02	-	260,000	"	
		3	2020.4.28.	화	21:33:35	-	270,000	"	
		4	2020.7.21.	화	22:00:52	-	230,000	"	
		소계						1,030,000	
	-	1	2018.4.2.	월	23:42:58	-	1,000,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18.5.4.	금	02:47:23	-	500,000	"	
		소계						1,500,000	
	-	1	2018.7.9.	월	22:12:20	-	450,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18.10.11.	목	22:05:33	-	350,000	"	
		3	2018.10.24.	수	22:21:33	-	600,000	"	
		4	2018.10.31.	수	22:02:30	-	350,000	"	
		5	2019.1.7.	월	22:06:32	-	350,000	"	
		소계						2,100,000	
	-	1	2018.4.16.	월	22:02:44	-	1,500,000	복리후생비	
		소계						1,500,000	
	-	1	2018.5.8.	화	20:47:14	-	670,000	연구비(발전기금)	
		소계						670,000	
	-	1	2018.12.17.	월	20:28:19	-	480,000	연구비(의국운영비)	
		소계						480,000	
		합계						61,51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외과연구비 집행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단위부서 운영보조비 지급내규」 제9조에 따르면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골프장 및 유흥업소등, 지불시간이 심야 시간 혹은 휴일이거나, 사용처가 근무지 인근이 아닌 개인주거지 인근이나 타지에서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중앙의료원 E은(는) 2018. 11. 28. ▽▽ (헬스장) 개인 회원권 구입비용 750천원을 외과연구비(발전기금)로 집행하는 등 【붙임】 “외과연구비 개인용도 사용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7.까지 위 E 등 5명은 총 45회에 걸쳐 헬스장 개인회원권 구입 등 비용 합계 55,818천원을 외과연구비(발전기금)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중징계(2명)</p> <p>○ 경징계(3명)</p> <p>○ 시정(회수)</p> <p>- 헬스장 개인회원권 구입 등 비용을 외과연구비로 집행한 합계 55,818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p>

【붙임】

외과연구비 개인용도 사용 현황

(단위 : 원)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비고	
-	-	1	2018.11.28.	수	20:53:55	-	750,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19.9.16.	월	21:04:48	-	2,730,000	"	
		3	2019.11.27.	수	21:04:53	-	1,980,000	"	
		4	2020.3.14.	토	11:56:51	-	1,980,000	"	
		5	2020.8.28.	금	21:01:44	-	3,300,000	"	
		6	2021.1.30.	토	17:08:59	-	1,120,000	"	
		7	2021.2.2.	화	19:39:13	-	1,980,000	"	
		8	2021.3.19.	금	21:56:12	-	3,300,000	"	
		9	2021.5.31.	월	20:58:11	-	1,980,000	"	
		10	2021.6.22.	화	20:53:28	-	390,000	"	
		11	2021.7.28.	수	19:54:37	-	390,000	"	
	소계							19,900,000	
	-	-	1	2018.3.2	금	12:47:31	-	650,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18.4.9.	월	18:57:27	-	650,000	"
			3	2018.5.10.	목	19:30:11	-	650,000	"
			4	2018.6.4.	월	20:22:32	-	650,000	"
			5	2018.6.19.	화	19:41:49	-	120,000	"
			6	2018.7.10.	화	18:29:29	-	650,000	"
			7	2018.7.25.	수	19:22:03	-	650,000	"
			8	2018.8.20.	월	18:01:16	-	650,000	"
			9	2018.9.14.	금	19:42:09	-	650,000	"
10			2018.10.12.	금	19:16:29	-	650,000	"	
11	2018.11.2.	금	19:32:36	-	650,000	"			
12	2018.11.21.	수	19:26:08	-	650,000	"			
13	2018.12.14.	금	19:18:47	-	650,000	"			
14	2019.1.7.	월	19:35:29	-	650,000	"			
15	2019.1.30.	수	19:25:40	-	650,000	"			
16	2019.3.13.	수	19:29:43	-	650,000	"			
17	2019.4.2.	화	19:58:22	-	650,000	"			
18	2019.4.18.	목	19:47:29	-	650,000	"			
19	2019.5.3.	금	19:57:20	-	650,000	"			
20	2019.8.14.	수	19:08:14	-	650,000	"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비고	
		21	2019.9.11.	수	19:21:26	-	650,000	"	
		22	2019.10.26.	토	15:03:26	-	650,000	"	
		23	2019.11.12.	화	18:11:17	-	650,000	"	
		24	2019.12.5.	목	18:06:32	-	650,000	"	
		25	2020.1.17.	금	18:19:22	-	650,000	"	
		26	2020.1.31.	금	21:01:06	-	650,000	"	
		27	2020.2.21.	금	20:06:07	-	650,000	"	
		28	2020.6.4.	목	19:05:16	-	650,000	"	
		소계							17,670,000
		-	1	2019.11.4.	월	20:32:52	-	2,750,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21.3.31.	수	18:49:00	-	2,750,000	"
			3	2021.7.30.	금	19:03:07	-	2,500,000	"
			소계						
		-	1	2020.1.29.	수	19:58:59	-	2,376,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21.1.27.	수	20:56:01	-	2,376,000	"
			3	2021.7.28.	수	20:52:23	-	2,376,000	"
			소계						
		-	1	2018.8.27.	월	10:30:47	-	1,485,000	연구비(발전기금)
			2	2020.6.3.	수	16:47:10	-	1,485,000	"
			3	2020.6.3.	수	16:46:34	-	150,000	"
			소계						
	합계							55,818,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p>공개경쟁입찰 직영공사 부당 및 허위 인건비 지급</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추정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공사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9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임금지급 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20. 5. 20.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며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ㄴ 공사를 병원 직영 공사로 결재 후 공사비 535,700천원을 일용직 인건비로</p>	<p>○ 중징계(1명)</p> <p>○ 경징계(2명)</p> <p>○ 경고(1명)</p> <p>○ 통보</p> <p>- 허위 인건비 264,415천원 중 재료비, 이윤 등 정당비용을 재산정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병원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 기간('20. 6. 15. ~ '20. 11. 16.) 동안 작업일지는 허위로 작성하고 자재수급부와 임금 지급명세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의 집행·관리·감독을 위한 전문기술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채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H(F의 아버지)에게 인건비 37,880천원을 지급 하는 등 【붙임】 “직영공사 허위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 6. 15.부터 '21. 7. 12.까지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며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위 'ㄴ 공사' 등 2건의 공사를 병원 직영 공사로 결재(7차례) 후 공사비 합계 677,910천원을 일용직 인건비로 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 기간('20. 6. 15. ~ '21. 7. 12.) 동안 작업일지는 허위로 작성하고 자재수급부와 임금지급명세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의 집행·관리·감독을 위한 전문기술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채 위 일용직 H 등 공사에 참여 하지 않은 8명과 공사에 부분 참여한 2명에게 인건비 총액 264,415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직영공사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일용직 성명	인건비			부정당 지급액	공사 참여 여부	비고
		지급액					
		5층 주차장 '20. 6. 15.~ '20. 11. 16.	2층 주차장 '20. 12. 31.~ '21. 7. 12.	합계			
1	-	28,880,000	9,000,000	37,880,000	37,880,000	불참	-
2	-	21,750,000	0	21,750,000	21,750,000	불참	-
3	-	25,080,000	6,600,000	31,680,000	31,680,000	불참	-
4	-	25,080,000	6,600,000	31,680,000	31,680,000	불참	-
5	-	18,350,000	6,780,000	25,130,000	25,130,000	불참	-
6	-	21,760,000	6,840,000	28,600,000	28,600,000	불참	-
7	-	28,630,000	6,800,000	35,430,000	35,430,000	불참	-
8	-	15,050,000	6,480,000	21,530,000	21,530,000	불참	-
9	-	28,880,000	9,000,000	37,880,000	16,443,360	부분참여	-
10	-	28,880,000	9,060,000	37,940,000	14,292,560	부분참여	-
11	-	21,750,000	8,850,000	30,600,000		참여	-
12	-	15,050,000	6,600,000	21,650,000		참여	-
13	-	28,930,000	8,800,000	37,730,000		참여	-
14	-	18,350,000	4,200,000	22,550,000		참여	-
15	-	25,240,000	6,800,000	32,040,000		참여	-
16	-	21,550,000	6,600,000	28,150,000		참여	-
17	-	28,990,000	6,800,000	35,790,000		참여	-
18	-	21,350,000	0	21,350,000		참여	-
19	-	28,770,000	8,800,000	37,570,000		참여	-
20	-	21,550,000	0	21,550,000		참여	-
21	-	15,050,000	6,600,000	21,650,000		참여	-
22	-	28,430,000	8,800,000	37,230,000		참여	-
23	-	18,350,000	2,200,000	20,550,000		참여	-
	합계	535,700,000	142,210,000	677,910,000	264,415,920		

<인건비 상세 지급 내역>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p>향정신성의약품(미다졸람, Midazolam) 임의 처방 무단</p> <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6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뜻한다고 되어 있고, 미다졸람(Midazolam)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 1호 및 5호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는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진정치료내규」에 따르면 미다졸람(Midazolam)은 중등도·고도 진정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지정되어 있고, 진정치료에는 진정동의서, 진정 전 평가서 및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구두처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I은(는) 2018. 3. 28. J이(가) 본인의 원활한 MRI 검사를 위하여 미다졸람(Midazolam) 투약을 요청하자 담당의사의 진정 전 평가서 및 처방전, 환자의 동의서 없이 미다졸람 3mg을 투약하는 등 【붙임】“미다졸람(Midazolam) 임의 투약 현황”과 같이 2018. 2. 13. 부터 2018. 3. 28.까지 I 등 2명은 위 J 등 2명에게 3회에</p>	<p>○ 중징계(1명)</p> <p>○ 경징계(1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부)</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결처 담당의사의 진정 전 평가서 및 처방전, 환자의 동의서 없이 미다졸람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p>	

【붙임】

미다졸람(Midazolam) 임의 투약 현황

연번	투약일시	투약자	투약대상자	투약량	투약사유
1	2018. 2. 13.	-	-	3mg	-
2	2018. 2. 26.	-	-	3mg	-
3	2018. 3. 28.	-	-	미확인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p>수당 등 지급 부적정</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원 급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교원의 급여는 월급으로 하고 별도로 정하는 “교원 급여기준표” 및 관련 내규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원 급여기준표(2017.3.1.)」 4. 보직수당 및 8. 자가운전 보조비에 따르면 L 보직수당은 월 3,000,000원, 자가운전 보조비는 월 2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p> <p>【보직수당 과다 지급】 -----①</p> <p>-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17.3월 L 보수를 지급하면서 교원 급여기준표에 따라 보직수당 3,000천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4,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1】 “L 보직수당 과다 지급현황”과 같이 2017.3.부터 2017.8.까지 L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직수당 합계 8,00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전용차량 제공자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②</p> <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9.12.3. K에게 전용차량을 렌트하여 운전기사를 배치하고서도 2019.9. 보수지급 시</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경고(2명)</p> <p>○ 시정(회수)</p> <p>- 보수를 지급하면서 과다 지급한 보직수당 합계 8,000천원을 L(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경고(2명)</p> <p>○ 시정(회수)</p> <p>- 전용차량 제공자에 대해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 합계 8,8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자가운전 보조비 2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 “전용 차량 제공 보직자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현황”과 같이 2019.12.부터 2021.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K 등 2명에게 전용차량을 렌트하여 운전기사를 배치하고서도 자가운전 보조비 합계 8,8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L 보직수당 과다 지급현황

(단위 : 원)

연 번	소속	직책	성명	보수 지급월	직책수당 지급 내역		과다 지급액
					실제	정상	
1	-	-	-	2017. 3.	4,000,000	3,000,000	1,000,000
2	-	-	-	2017. 4.	4,000,000	3,000,000	1,000,000
3	-	-	-	2017. 5.	4,000,000	3,000,000	1,000,000
4	-	-	-	2017. 6.	4,000,000	3,000,000	1,000,000
5	-	-	-	2017. 7.	4,000,000	3,000,000	1,000,000
6	-	-	-	2017. 8.	6,000,000	3,000,000	3,000,000
합 계					26,000,000	18,000,000	8,000,000

【붙임2】

전용차량 제공 보직자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책	이름	전용차량 제공내역			자가운전보조비 지급현황	
				제공기간	차량	차량번호	기간	금액
1	-	-	-	2019.12.3.~ 2023.12.3	렌터카	-	2019. 12.~ 2021. 9.	4,400,000
2	-	-	-	2019.12.3.~ 2023.12.3	렌터카	-	2019. 12.~ 2021. 9.	4,400,000
합 계								8,80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p>복리후생비 사적사용</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 제2호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현물식사대, 의복·개인 장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중앙의료원 M은(는) 2018. 8. 28.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고서 식사비용 39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의료원 부서장들과 점심식사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집행하는 등</p> <p>【붙임】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현황”과 같이 위 M은(는) 총 2회에 걸쳐 지인과 사적 식사비용 합계 1,39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직원 식사비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1명)</p> <p>○ 시정(회수)</p> <p>- 사적용도로 사용한 복리후생비 사용금액 합계 1,395,000원을 M(으)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붙임】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현황

(단위: 원)

연번	사용일	가맹점명	결제액	지출일	지출 적요	실제 사용용도	계정과목
1	2018. 8. 28	-	398,000	2018. 8. 31	부서장 점심식사	지인(친구)과 식사 비용	복리후생비
2	2018. 10. 1	-	997,000	2018. 10. 10	직원식사	지인(친구)과 식사 비용	복리후생비
합계			1,395,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p>의료원 세탁물 관리 용역 계약체결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구매·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구매 계약 규정은 법인 및 각 단위기관(대학 성의교정,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구매계약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모든 계약은 단위기관 담당 부서에서 법인 계약 담당부서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계약부서는 모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8. 1. 11.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ㄷ 계약(계약금액 1,633,120천원)”을 가톨릭중앙의료원 퇴직자가 운영하는 <<와(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붙임】 “ㄷ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계약 5건(계약금액 합계 14,399,669천원)을 위 <<와(과)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p>	○ 경징계(3명)

【붙임】

의료원 세탁물 관리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약기간	계약자(대표)	계약금액	비고
1	2018. 1. 1. ~ 2018. 12. 31.	-	1,633,120,170	-
2	2019. 1. 1. ~ 2019. 4. 30.	-	573,695,200	-
3	2019. 5. 1. ~ 2019. 12. 31.	-	1,520,000,000	-
4	2020. 1. 1. ~ 2020. 12. 31.	-	4,816,304,680	-
5	2021. 1. 1. ~ 2021. 12. 31.	-	5,856,549,600	-
합계			14,399,669,65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p>직원채용 전형별 세부계획 미수립</p> <p>○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0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평가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의 요령 및 방법은 따로 정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신규채용 전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의 유무와 경력 등을 심사하고, 전형위원은 보직자(실, 처장, 부원장급)와 인사부서장, 실무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지원자의 합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평가,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6. 4. ‘♣♣팀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전형별 요령 및 방법 등 세부계획 없이 전형을 진행하는 등 【붙임】 “전형별 세부 진행계획 미수립 현황”과 같이 2016. 4.부터 2021. 6.까지 총 9회에 걸쳐 전형별 요령 및 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이로 인해, 2016. 4. N와(과) O은(는)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팀 사무직’에 지원한 21명 중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는 등 위 9회의 채용에 있어 전형별 요령 및 방법 등 세부계획 없이 ◇◇부서장과 ♡♡부서장이 서류전형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직원 채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 바람</p>

【붙임】

전형별 세부 진행계획 미수립 현황

연번	채용 현황			서류전형	
	시기	모집분야	합격자	평가자	선발인원
1	2016. 4.	-	-	-	5명
2	2016. 4.	-	-	-	5명
3	2018. 2.	-	-	-	4명
4	2018. 6.	-	-	-	10명
5	2018. 10.	-	-	-	1명
6	2018. 12.	-	-	-	3명
7	2019. 8.	-	-	-	5명
8	2019. 10.	-	-	-	4명
9	2021. 6.	-	-	-	1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p>면접점수 오기로 인한 면접전형 합격자 전도 등</p> <p>○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0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평가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요령 및 방법은 따로 정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신규채용 전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의 유무와 경력 등을 심사하고, 전형위원은 보직자(실, 처장, 부원장급)와 인사부서장, 실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지원자의 합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평가,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의료원 행정직 공채 1차 면접(1~2차) 전형계획」에 따르면 1차 면접(3유형 전형)은 프리젠테이션, 영어, 심층역량 면접을 통해 최종 보직자 면접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p> <p>【영어면접 점수집계 오기】 -----①</p> <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8. 1. 4. 행정직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지원자 43명의 1차 면접점수(PPT 30%, 영어 30%, 심층역량 40%)를 집계하면서 지원자 P의 영어면접 점수가 95점임에도 79점으로 오기하여 1차 면접점수 합계 86.5점, 실제 10순위로 최종 보직자면접대상자(20명 선발)임에도 81.7점, 23순위로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1】 “영어면접 점수집계 오기현황”과 같이 1차 면접점수</p>	<p>【①, ② 관련】</p> <p>○ 경징계(2명)</p> <p>○ 경고(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를 집계하면서 지원자 17명의 영어면접 점수를 오기 하여 위 P 등 지원자 4명의 1차 면접전형 합격과 불합격이 전도된 사실이 있음</p> <p>※ 실제 1차 면접전형 탈락대상자 중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없음</p> <p>【동점자 처리기준 未구비】 -----②</p> <p>-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9. 2. 20. 행정직 7명을 채용하기 위해 보직자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붙임2】 “행정직 공채 최종면접 점수집계 현황”과 같이 면접 점수(79.6점)가 같은 7순위자가 2명(Q R)으로 집계되었는데도 동 순위자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위 Q을(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영어면접 점수집계 오기현황

순번	성명	영어(30%)		심층역량 (40%)	프레젠테이션 (30%)	계(100%)		순위	
		기존	실제			기존	실제	기존	실제
1	-	98.0	98.0	90.2	92.0	93.1	93.1	1	1
2	-	92.0	88.0	95.4	86.7	91.7	90.5	2	4
3	-	93.6	97.4	96.0	82.7	91.3	92.4	3	2
4	-	93.4	93.4	91.7	88.0	91.1	91.1	4	3
5	-	89.2	89.2	90.5	88.0	89.4	89.4	5	5
6	-	89.4	89.4	93.7	81.3	88.7	88.7	6	6
7	-	89.0	89.0	91.4	82.7	88.0	88.0	7	7
8	-	93.4	93.4	86.7	82.7	87.5	87.5	8	8
9	-	91.8	91.8	80.5	89.3	86.6	86.6	9	9
10	-	97.4	93.6	83.2	77.3	85.7	84.6	10	14
11	-	86.2	90.6	94.0	72.0	85.1	86.4	11	11
12	-	92.0	92.0	87.3	74.7	84.9	84.9	12	12
13	-	89.0	91.2	82.2	81.3	84.0	84.6	13	13
14	-	93.2	79.0	88.5	68.0	83.8	79.5	14	31
15	-	85.8	85.8	80.3	85.3	83.5	83.5	15	15
16	-	88.0	86.8	85.2	76.0	83.3	82.9	16	20
17	-	96.6	96.6	75.7	80.0	83.3	83.3	17	17
18	-	85.4	85.4	80.0	85.3	83.2	83.2	18	18
19	-	95.0	96.4	77.5	77.3	82.7	83.1	19	19
20	-	88.8	88.8	77.9	82.7	82.6	82.6	20	21
21	-	88.6	88.6	86.5	70.7	82.4	82.4	21	22
22	-	96.4	92.0	70.0	84.0	82.1	80.8	22	26
23	-	79.0	95.0	85.0	80.0	81.7	86.5	23	10
24	-	90.0	90.0	75.9	80.0	81.3	81.3	24	25
25	-	95.0	86.2	71.0	81.3	81.3	78.7	25	34
26	-	90.6	95.0	74.7	80.0	81.1	82.4	26	23
27	-	91.2	90.2	79.0	73.3	81.0	80.7	27	27
28	-	92.2	92.2	72.3	80.0	80.6	80.6	28	28
29	-	91.2	91.2	76.0	76.0	80.6	80.6	29	29
30	-	79.2	89.0	88.7	70.7	80.4	83.4	30	16
31	-	90.6	90.6	71.0	82.7	80.4	80.4	31	30
32	-	86.8	79.2	85.7	66.7	80.3	78.0	32	35
33	-	90.2	83.8	74.0	76.0	79.5	77.5	33	36
34	-	88.4	88.4	76.0	73.3	78.9	78.9	34	32
35	-	95.6	95.6	73.2	69.3	78.8	78.8	35	33
36	-	83.8	93.2	78.7	73.3	78.6	81.4	36	24
37	-	84.6	84.6	75.5	72.0	77.2	77.2	37	37
38	-	90.0	90.0	69.0	74.7	77.0	77.0	38	38
39	-	87.0	87.0	68.5	76.0	76.3	76.3	39	39
40	-	78.6	78.6	80.7	66.7	75.8	75.8	40	40
41	-	79.2	79.2	76.9	70.7	75.7	75.7	41	41
42	-	72.0	72.0	73.7	72.0	72.7	72.7	42	42
43	-	70.0	70.0	64.0	68.0	67.0	67.0	43	43

【붙임2】

행정직 공채 최종면접 점수집계 현황

면접 순번	성명	-	-	-	-	-	평균	순위
2	-	-	95	95	90	92	93.0	1
20	-	90	90	94	90	94	91.6	2
1	-	-	94	95	90	86	91.3	3
7	-	88	94	95	90	89	91.2	4
17	-	85	94	94	90	84	89.4	5
9	-	80	94	94	90	73	86.2	6
18	-	75	90	91	80	62	79.6	7
11	-	85	88	88	75	62	79.6	7
5	-	-	88	91	70	61	77.5	9
8	-	85	88	88	70	56	77.4	10
3	-	-	88	90	70	56	76.0	11
12	-	65	90	86	75	62	75.6	12
6	-	65	88	90	70	63	75.2	13
14	-	75	88	89	70	53	75.0	14
19	-	70	90	87	80	48	75.0	14
4	-	-	88	88	70	50	74.0	14
15	-	60	90	84	70	65	73.8	17
13	-	70	88	87	75	48	73.6	18
16	-	70	88	85	70	48	72.2	19
10	-	60	88	87	70	46	70.2	2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p>출신대학 · 연령차별 등 직원 채용 서류평가 부당</p> <p>○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신규채용 전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의 유무와 경력 등을 심사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모집 및 선발 내규」 2. 관리 5. 전형위원 6. 합격결정에 따르면 채용 전형은 인사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별도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전형위원은 보직자(실·처장, 부원장급)와 인사부서장, 실무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은평성모병원 정규직 직원 채용 전형별 인력 선발 기준」가.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르면 학력, 전공, 학점, 어학, 경력 등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출신대학 및 종교 등 차별】 -----①</p> <p>-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 3. 21. ‘☺☺팀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없이 S와(과) R이(가)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p>	<p>【① 관련】</p> <p>○ 16번에 포함 조치 (2명)</p> <p>【② 관련】</p> <p>○ 경징계(1명)</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29점에서 최저 10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종교점수 3점의 가점, 특정 지원자에게는 외모점수 최고 25점에서 최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1】 “대학 및 종교 등 차등점수 부여현황”과 같이 2016년도 위 ☞☞팀 사무직 등 2개 모집분야 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없이 S와 (과) R은(는) 지원자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 및 특정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위 ‘☞☞팀 사무직 채용’ 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 U를 ‘면접탈락 이력’이 있다는 사유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2】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불합격 처리현황”과 같이 2016년도 위 ☞☞팀 사무직 등 2개 모집분야 채용을 진행하면서 위 U 등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12명을 ‘면접탈락 이력’, ‘외모 下·나이’ 등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p> <p>【연령·성별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②</p> <p>- 가톨릭대학교 V은(는) 2020. 10. 5.경 ‘☆☆팀 사무직 채용’ 지원자 72명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지원자 W이(가) 32세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등 【붙임3】 “연령 적용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현황”과 같이 위 전형 지원자 13명에 대하여 연령이 ‘만31세 이상’이란 이유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고,</p> <p>- 나아가,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 대해서도 【표1】의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붙임4】 “연령·성별 서류평가</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차등점수 부여현황”과 같이 연령·성별에 따라 최고 10점에서 최저 5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p> <p>[표1] 연령·성별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242 461 1123 869"> <thead> <tr> <th rowspan="2">연령</th> <th colspan="2">서류전형 평가점수 부여현황</th> </tr> <tr>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만 31세 이상</td> <td>불합격</td> <td>불합격</td> </tr> <tr> <td>만 30세 이하</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만 29세</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만 28세</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만 27세</td> <td>15점</td> <td>15점</td> </tr> <tr> <td>만 26세</td> <td>15점</td> <td>15점</td> </tr> <tr> <td>만 25세 이하</td> <td>15점</td> <td>10점</td> </tr> </tbody> </table>	연령	서류전형 평가점수 부여현황		남성	여성	만 31세 이상	불합격	불합격	만 30세 이하	20점	15점	만 29세	20점	15점	만 28세	20점	15점	만 27세	15점	15점	만 26세	15점	15점	만 25세 이하	15점	10점	
연령	서류전형 평가점수 부여현황																											
	남성	여성																										
만 31세 이상	불합격	불합격																										
만 30세 이하	20점	15점																										
만 29세	20점	15점																										
만 28세	20점	15점																										
만 27세	15점	15점																										
만 26세	15점	15점																										
만 25세 이하	15점	10점																										

【붙임1】

서류평가 대학 및 종교 등 차별 점수 부여현황

※ 생략

【붙임2】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불합격 처리현황

※ 생략

【붙임3】

연령 적용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현황

※ 생략

【붙임4】

연령·성별 서류평가 차등점수 부여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자녀 채용 전형위원 참여 부당 등</p> <p>○ 「의정부성모병원 취업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모집 및 선발 내규」 2. 관리 5. 전형위원 6. 합격결정에 따르면 채용 전형은 인사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별도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전형위원은 보직자(실· 처장, 부원장급)와 인사부서장, 실무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면접대상과 연고관계에 있는 전형위원은 면접전형에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자격검증 결과 자격미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의정부성모병원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지원서, 학교, 학점, 경력, 업적/과업, 어학, 자격증, 상위학력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모집 공고(‘16. 2, ‘16. 3, ‘16. 8.)」에 따르면 자격증 및 기타 관계 서류는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팀 사무직 응시자격(‘16. 2.)을 대학 관련과[행정(비서학)·법정·상경계열] 졸업자, ☞☞팀 사무직 응시자격(‘16. 3.)은 경상 및 보건계역 전문대졸 이상으로 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고서도,</p> <p>【아들 지원 채용과정 업무참여 부당 등】 -----①</p> <p>- 의정부성모병원 S은(는) 2016. 9. 19. ‘☆☆팀 사무직 직원 채용’에 있어 아들 X이(가) 위 전형에 지원하였음에도 별도의 서류전형위원 구성없이 T와(과) 본인이 직접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아들 X이(가) 응시원서에</p>	<p>○ 중징계(2명) (15번과 병합 처리)</p> <p>○ 통보 - 어학성적(TOEIC, 730점) 응시·취득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어학성적을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최종 합격한 X에 대해 관련 성적 취득사실 확인 후 정관, 규정, 채용공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기재한 어학성적(TOEIC, 730점) 응시일(2013. 8. 31.)이 지원 일 기준 2년 이상 경과되어 성적 효력이 없음에도, 어 학점수 2.5점(3점 만점)을 부여하고,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교육(3시간) 이수실적을 직무자격으로 인정 하여 자격점수 0.5점(만점)을 부여하는 등 위 X에게 서류 전형 합격 하한선(17점) 이상의 점수(17.25점)을 부여하여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S은(는) 2016. 9. 28. 아들 X가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전형 참여를 회피하지 않은 채, 면접위원으로 참여 하여 총 지원자 10명 중 X에게 최고점(85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p> <p>* 최저점 79점, 최고점 85점</p> <p>【직원자녀 지원 채용과정 평가 부당 등】 -----②</p> <p>-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 3. 21. ‘♀♀팀 사무직원 채용’을 위한 별도의 서류전형위원 구성없이 S와(과) T이(가) 지원 자 86명에 대한 서류전형(10명 선발)을 실시하면서 자격 요건을 상경 및 보건계열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공고하고 도 전공이 상이한 지원자 Y에게 전공점수 3점(5점 만점)을 부여하고 나아가, 어학성적, 직무관련 자격증 및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위 Y에게 공고 및 서류전형 평가 항목 에도 없는 외모점수 10점과 기타점수 3점을 부여하여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S와(과) T은(는) 2016. 2. 10경 ‘◀◀팀 사무직 채용’ 을 위한 별도의 서류전형위원 구성없이 서류전형을 실시 하면서 지원자 8명 모두 ‘전공 상이 등 부적합’ 이유로 서류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재공고 등 절차 없이 S의 지시에 의해 지원자 8명 중 Z을(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전형조서(서류평가 45점)를 작성하고,</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인성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인성·직무적성 결과지를 만들어 보직자 면접전형 후 위 Z을(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p>응시원서 허위기재 지원자 채용 등</p> <p>○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평가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전형요령 및 방법은 따로 정하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신규채용 전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의 유무와 경력 등을 심사하고, 지원자의 합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평가,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며, 채용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 모집 공고문(‘19. 8., ’21. 8.)」에 따르면 허위 사실 기재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하고, 「성의교정 신규행정직 채용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졸업평점 B(3.0) 이하자는 서류전형 탈락기준 해당자로 처리하며, 「은평성모병원 ◀◀팀 사무직 지원자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성적항목은 4.0 이상 20점, 3.5 이상 17점, 3.0 이상 14점, 2.5이상 11점으로 평가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공채 모집 공고(‘16. 3.)」에 따르면 자격증 및 기타 관계 서류는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AA은(는) 2021. 8. 16. ‘성의교정 행정사무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대학(경기대) 평점평균이 2.44(서류전형 탈락기준 점수)임에도 3.2로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 1순위로 위 사무직에 최종</p>	<p>○ 경고(3명)</p> <p>○ 통보</p> <p>- 대학 평점평균을 허위로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최종 합격한 3명을 정관 규정, 채용공고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합격하는 등 【붙임】 “대학 성적 허위기재 지원자 합격 현황”과 같이 2019. 6.부터 2021. 8.까지 성의교정 행정 사무직 등 3개 모집분야에 지원한 위 AA 등 3명은 대학 평점평균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 1순위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21. 8. 30. 면접전형 1순위자 위 AA이(가) 제출한 대학 성적증명서(평점평균 2.44점)와 응시원서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확인 없이 합격 결정하는 등 의료원 등 3개 부속병원은 각 전형에서 면접전형 1순위 AA 등 3명이 제출한 대학 성적증명서와 응시원서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확인 없이 각 합격 결정한 사실이 있음 	

【붙임】

대학 성적 허위기재 지원자 합격현황

(단위 : 점, 명)

연 번	채용 현황			성적 허위 기재사항			서류전형		
	시기	모집분야 (직종)	합격자 (현 소속)	대학	실제 성적	기재 성적	지원자	합격자	비고
1	2021. 8.	-	-	-	2.44	3.2	76	20	-
2	2019. 8.	-	-	-	3.35	4.0	153	8	-
3	2016. 3.	-	-	-	2.64	3.2	86	1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p>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p> <p>○ 「교육공무원임용령(2009.1.16.개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 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8. 3. 1.자 2018학년도 1학기 전임 교원 1명을 채용하면서 당시 신학대학 신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교 ■■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18명 중 15명(83.3%)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대학교 ■■과 학사학위 소지자인 AB을(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등</p> <p>【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신학과 등 3개 학과에서 전임교원 신규채용 당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됨에도 위 AB 등 10명의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음</p>	○ 기관경고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

연번	신규 채용자 현황				채용 후 교원구성(명,%)			비고
	소속	임용학기	성명	출신학과 (전공)	교원수	동일학과 학위소지자수	비율	
1	신학대학 신학과	2018-1 (2018.3.1)	-	-	19	16	84.2	성신
2	신학대학 신학과	2019-1 (2019.3.1)	-	-	20	16	80.0	성신
3	신학대학 신학과	2021-1 (2021.3.1)	-	-	17	12	70.6	성신
4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0-1 (2020.3.1)	-	-	14	10	71.4	성의
5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0-1 (2020.3.1)	-	-	14	10	71.4	성의
6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0-1 (2020.3.1)	-	-	14	10	71.4	성의
7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0-1 (2020.3.1)	-	-	14	10	71.4	성의
8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1-1 (2021.3.1)	-	-	16	11	68.8	성의
9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1-2 (2021.9.1)	-	-	17	12	70.6	성의
10	수학과	2020-2 (2020.9.1.)	-	-	4	3	75.0	성심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p>민원 및 징계 관련 업무 처리 등 부당</p> <p>○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의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고등교육정책과-5433, ‘18.5.25)에 따르면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비밀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가톨릭학원 정관」 제64조의2 및 「가톨릭대학교 교직원복무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징계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교직원은 관계 법령, 정관 및 제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8. 10. 5. 제413차 성심교정 교원인사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면서 A이(가)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명시하는 등 【붙임】 “교육부 민원 제기 사실 공문 등 명시 현황”과 같이 2018. 10. 5.부터 2021. 1.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A 교수의 교육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을 공문 및 회의 자료에 명시한 사실이 있고,</p>	<p>○ 경징계(1명) (20번과 병합 처리)</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가톨릭대학교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를 위한 성심교정 교원인사위원회 및 전체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라는 내용을 징계요구 사유로 명시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상정한 사실이 있음 - 가톨릭대학교 B은(는) 2019. 5. 30. A이(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11. 17.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020. 5. 20.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실이 없는 A에 대한 가톨릭학원 이사장 명의의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항소이유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붙임】

교육부 민원 제기 공문 등 명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p>체류자격 부적격자 초빙교원 임용 부당</p> <p>○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교수(E-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가톨릭대학교 교직원복무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본교의 봉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책무를 완수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관계 법령, 정관 및 제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B은(는) AC이(가) 2019. 5. 13. AD의 초빙교수 임용 관련 서류(이력서, 추천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등)가 모두 누락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위 AD을(를) ▲▲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재가 문서를 기안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가톨릭대학교 ▼▼팀은 B이(가) 2019. 5. 13. 이후 날짜 미상일 직접 ▼▼팀에 전달한 위 AD의 외국인</p>	<p>○ 19번에 포함조치 (1명)</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등록증 사본의 체류자격이 유학(D-2)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초빙교원 임용에 필요한 교수(E-1) 체류자격 기준 미달자인 AD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는 2021. 4. 30.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E-1) 체류자격이 없는 AD을(를) 초빙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9,000천원을 부과 받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p>기록물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은(는) ▼▼팀에서 2017년 미상일 생산한 ‘르 관련 서류’ 등의 기록물을 폐기하면서 생산부서 심의 회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등 【붙임】 “기록물 폐기절차 미준수 보유문서 폐기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9건의 보유 기록물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기록물 폐기 시 관련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등 기록물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붙임】

기록물 폐기절차 미준수 보유문서 폐기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p>일반직원 정원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 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별표 2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사무 조직 정원은 일반직 2급~9급, 기술직 3급~9급, 기능직 5등급~10등급, 별정직 5급~6급으로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2016. 5. 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고 실장 등 11개의 직위를 따로 정하는 등 【붙임】 “성신교정 직원 정·현원 현황”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과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직원 정원을 정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붙임】

성신교정 직원 정·현원 현황

직종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성신교정 취업규칙 및 직원 현황 (2021.9.1. 기준)		
	직급	정원	취업규칙상 직위	정원	현원
일반직	2급	7	실장	-	1
	3급	33	차장	-	0
	4급	41	과장	-	14
	5급	49	대리	-	1
	6급	61	주임	-	1
	7급	44	사원	-	3
	8급	16			
	9급	5			
기술직 (행정기술직, 의료기술직)	3급	5	기장	-	0
	4급	15	수석기사	-	5
	5급	13	책임기사	-	2
	6급	19	선임기사	-	0
	7급	18	기사	-	1
	8급	13			
	9급	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p>직원 임용 절차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70조2 제2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 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정관」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는 2019. 3. 1.자 AE을(를) 신규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고 총장 결재만으로 임용하는 등 【붙임】 “신규직원 총장 임용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AE 등 직원 40명을 신규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고 각 교정별 최종 결재자의 결재만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1명) ○ 통보 - 직원 임용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람

【붙임】

신규직원 총장 임용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p>직원 징계 감경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5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총장은 직원 징계 위원회의 징계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AF은(는) 2018. 4. 16.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된 AG을(를) 2018. 6. 1. 주의로 감경하여 처분하는 등 【붙임】 “직원 징계 감경 현황”과 같이 2018. 6.부터 2021. 9.까지 위 AG 등 직원 6명에 대하여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처분을 임의 감경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통보 - 징계대상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직원 징계 감경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p>직원 승진 임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중앙의료원 「직원승진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선발 시에는 인사평가, 전형평가에 따라 전형위원회에서 선발하고, 각 직급별 정기승진 자격은 직급별로 정한 승진연한에 달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9. 3. 1. AH의 승진연한(5년)이 미달되었는데도 AI의 결재만으로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등 【붙임】 “직원 승진연한 미달자 승진 임용 현황”과 같이 2018. 6.부터 2020. 1.까지 위 AH 등 직원 5명을 승진연한이 미달되었는데도 AI 결재만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붙임】

직원 승진연한 미달자 승진 임용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p>건설본부장 채용 절차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신규채용에 따른 기획수립과 채용절차는 총장이 결정하며 이에 따른 제반 행정적 업무는 사무처장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무처 건설본부장 (특수계약행정직) 모집 공고*(2020.1.29.)’에는 지원 자격, 전형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도, * 지원자격: 건설사 실무경력 25년 이상, 1군 건설사 기술본부장 이상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 가톨릭대학교는 2020. 2. C을(를)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 기간(2020.1.29.~2.4.) 종료 전인 2020. 2. 4. AJ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경력증명서 미제출) 적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면접을 실시하고, 2020. 2. 6. 임용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p>범죄처분 통보자 징계 미요구 등</p> <p>【교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①</p> <p>○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9. 9. 10. AK의 음주운전 단속기록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고도, 2차례 교정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 “음주운전 단속기록 통보 대상자 징계의결 미요구 현황”과 같이 위 AK 등 음주운전 단속 교원 6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교정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①, ② 관련】</p> <p>○ 통보</p> <p>-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직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5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는 2018. 6. 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AL이(가) 2018. 5. 29.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붙임】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현황”과 같이 2018. 6.부터 2020. 10.까지 위 AL 등 직원 2명에 대하여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1】

음주운전 단속기록 통보대상자 징계의결 미요구 현황

※ 생략

【붙임2】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p>교직원 신규임용자 결격사유 제한 여부 등 미확인</p> <p>○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18. 7. 17.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전임교원 신규임용자 결격사유조회 미실시】 ---①</p> <p>- 가톨릭대학교는 2018. 3. 1. AM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신규임용 하는 등 【붙임1】 “결격사유조회 미실시 교원 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위 AM 등 191명의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직원 신규임용자 성범죄경력 미확인】 ---②</p> <p>- 또한, 2018. 8. 1. 성심교정 AO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하는 등 【붙임2】 “성범죄경력 미확인 직원 임용 현황”과 같이 2018. 8.부터 2021. 10. 까지 위 AO등 186명의 직원을 신규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①, ② 관련】</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결격사유 조회 미 실시자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에 대해 각각 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p>

【붙임1】

결격사유조회 미실시 교원 임용 현황

※ 생략

【붙임2】

성범죄 경력 미확인 직원 임용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p>연구 용역 구매 절차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일반용역 계약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각 단위 기관에서는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단위기관에서 자체 계약을 진행하고, 용역대상 등 적정한 형식과 첨부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가톨릭 정밀의학 연구센터 운영규정」 제8조의2 및 「가톨릭인간유전체 다형성연구소 운영규정」 제9조의2에 따르면 외주용역 진행 시 500만원 이상은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연구센터는 2018. 6. 25. '□ 연구 용역(금액 8,602천원)'을 '●●'와(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연구비 8,602천원을 지출하는 등 【붙임】 “연구 용역 구매 절차 부당 현황”과 같이 2018. 6.부터 2019. 4.</p>	<p>○ 경징계(1명)</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까지 위 ○○연구센터 및 ●●연구소는 ○○와(과) 용역계약 체결 없이 위 '□ 연구 용역' 등 5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총 36건, 연구비 합계 468,833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연구 용역 구매 절차 부당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연도	부서명	연구 용역	금액	지급일	거래처(대표자)	수단	카드승인일	계약 여부	비고
1	2018	-	-	8,602	2018-06-25	-	카드	2018-05-30	×	계약 미체결
2	2018	-	-	6,545	2018-07-25	-	카드	2018-06-21	×	계약 미체결
3	2018	-	-	8,580	2018-07-25	-	카드	2018-06-21	×	계약 미체결
4	2018	-	-	7,568	2018-07-25	-	카드	2018-06-22	×	계약 미체결
5	2018	-	-	9,240	2018-07-25	-	카드	2018-06-25	×	계약 미체결
6	2018	-	-	6,655	2018-08-25	-	카드	2018-07-06	×	계약 미체결
7	2018	-	-	6,600	2018-08-25	-	카드	2018-07-16	×	계약 미체결
8	2018	-	-	9,504	2018-08-25	-	카드	2018-07-31	×	계약 미체결
9	2018	-	-	8,624	2018-08-25	-	카드	2018-08-02	×	계약 미체결
10	2018	-	-	27,060	2018-09-25	-	카드	2018-08-23	×	수의계약 부적정
11	2018	-	-	36,080	2018-10-25	-	카드	2018-09-14	×	수의계약 부적정
12	2018	-	-	18,700	2018-10-25	-	카드	2018-09-27	×	계약부서 미의뢰
13	2018	-	-	11,220	2018-11-25	-	카드	2018-10-19	×	계약부서 미의뢰
14	2018	-	-	19,204	2018-11-25	-	카드	2018-10-19	×	계약부서 미의뢰

연번	회계연도	부서명	연구 용역	금액	지급일	거래처(대표자)	수단	카드승인일	계약 여부	비고
15	2018	-	-	27,060	2018-11-25	-	카드	2018-10-19	×	수의계약 부적정
16	2018	-	-	14,190	2018-12-25	-	카드	2018-11-15	×	계약부서 미의뢰
17	2018	-	-	21,175	2018-12-25	-	카드	2018-11-22	×	계약부서 미의뢰
18	2018	-	-	11,088	2018-12-25	-	카드	2018-11-30	×	계약부서 미의뢰
19	2018	-	-	16,830	2018-12-25	-	카드	2018-11-30	×	계약부서 미의뢰
20	2018	-	-	7,524	2019-01-25	-	카드	2018-12-20	×	계약 미체결
21	2018	-	-	14,300	2019-01-25	-	카드	2018-12-20	×	계약부서 미의뢰
22	2018	-	-	16,500	2019-01-25	-	카드	2018-12-20	×	계약부서 미의뢰
23	2018	-	-	6,160	2019-01-25	-	카드	2018-12-24	×	계약 미체결
24	2018	-	-	7,392	2019-01-25	-	카드	2018-12-24	×	계약 미체결
25	2018	-	-	9,394	2019-01-25	-	카드	2018-12-24	×	계약 미체결
26	2018	-	-	18,975	2019-01-25	-	카드	2018-12-24	×	계약부서 미의뢰
27	2018	-	-	9,108	2019-02-25	-	카드	2019-01-16	×	계약 미체결
28	2018	-	-	9,240	2019-02-25	-	카드	2019-01-16	×	계약 미체결
29	2018	-	-	9,108	2019-02-25	-	카드	2019-01-24	×	계약 미체결
30	2018	-	-	8,729	2019-02-25	-	카드	2019-01-31	×	계약 미체결
31	2019	-	-	7,700	2019-04-25	-	카드	2019-03-15	×	계약 미체결

연번	회계연도	부서명	연구 용역	금액	지급일	거래처(대표자)	수단	카드승인일	계약 여부	비고
32	2019	-	-	14,300	2019-04-25	-	카드	2019-03-15	×	계약부서 미의뢰
33	2019	-	-	19,800	2019-04-25	-	카드	2019-03-20	×	계약부서 미의뢰
34	2018	-	-	8,250	2018-08-25	-	카드	2018-07-16	×	계약 미체결
35	2018	-	-	8,228	2018-10-25	-	카드	2018-09-14	×	계약 미체결
36	2018	-	-	19,600	2018-11-25	-	카드	2018-10-31	×	계약부서 미의뢰
합 계				468,83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p>이월금 관리 부적정</p> <p>【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 ①</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안내(2017.1.)’ 및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에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을 당해연도 교비회계(등록금 회계) 수입 총액의 일정비율(18연도 이후 1%)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이월은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자금(불용액, 예산절감, 사업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p> <p>※ 이월금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의 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명시이월</td> <td>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td> </tr> </tbody> </table>	구 분	의 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p>【① 관련】</p> <p>○ 경고(1명)</p> <p>【② 관련】</p> <p>○ 주의(3명)</p>
구 분	의 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table border="1" data-bbox="300 264 1117 515"> <thead> <tr> <th data-bbox="300 264 438 309">구 분</th> <th data-bbox="438 264 1117 309">의 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0 309 438 515">사고이월</td> <td data-bbox="438 309 1117 515">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td> </tr> </tbody> </table> <p data-bbox="255 548 1141 1232"> - 가톨릭대학교는 2018 등록금회계 예산에서 미지급금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722,155천원을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명시이월금으로 처리하는 등 【붙임1】 “기타이월금 명시이월금 처리 현황”과 같이 2018회계 연도에 등록금회계 예산 불용액 합계 722,155천원을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금로 처리하였고, · 따라서 2018회계연도 실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1,095,712천원(1.27%)으로 기타이월금 한도 863,696천원(1.00%)을 232,016천원(0.27%) 초과하게 되는 등 【붙임2】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과 같이 2018회계연도 기타이월금이 이월금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p> <p data-bbox="239 1265 1141 1321">【이월 대상 미집행액 미지급금 회계처리】 ----- ②</p> <p data-bbox="231 1344 1141 1960">○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은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 및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도,</p>	구 분	의 미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구 분	의 미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가톨릭대학교는 2019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 연구비 과목에서 발생한 '비 용역비' 미집행액 36,300천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집행하는 등 【붙임3】 “미집행액 미지급금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위 '비 용역비' 등 2건, 미집행액 합계 82,570천원을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2018회계연도	비고
명시이월금	722,155	미지급금, 선금법인세, 선금지방소득세

【붙임2】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2018 회계연도	비고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액)	722,155	미지급금 등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 외)	373,557	
기타이월금 합계	1,095,712	1.27%
기타이월금 한도*	863,696	1.00%
한도 초과액	232,016	0.27%

*** 기타이월금 한도**

(단위 : 천원)

항목	2018 회계연도	비고
등록금회계 운영수입	86,369,563	
기타이월금 한도율	1.00%	
한도	863,696	

【붙임3】

미집행액 미지급금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미지급금 설정				처리 내역				비고	
회계 연도	회계 단위	계정 과목	설정액	내역	집행일	집행액	내역		잔액
2019	등록금	연구비	36,300	-	2020522	36,300	좌동	0	-
	비 등록금	연구 관리비	46,270	-	2020820	46,270	좌동	0	-
합 계			82,570			82,570		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p>징계교원 급여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2. 20. 이전 '정직' 처분자의 경우 보수의 3분의 2감액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2018. 11. 24. 정직3월 처분을 받은 AP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정근수당 5,607,000원, 명절수당 400,000원, 진료수당 6,300,000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붙임】 “징계교원 보수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2018. 12월부터 2021. 5월까지 위 AP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명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감액해야할 보수 합계 18,704,7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한 급여 합계 18,704,700원을 AP 등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게 바람

【붙임】

징계교원 보수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p>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2018. 3. 30. AQ의 모친상 교원 상조회 조의금 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하고, 이후 차기 급여 지급 시 회원 개인별 금액을 공제하는 등 【붙임】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3월부터 2021. 8월까지 교원 상조회가 운영하는 경조사비·퇴직위로금 등을 교비로 선지급하고 차월 급여에서 개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비(비등록금)회계 합계 1,515,639,000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향후 개인명의 교직원 경조사비·친목회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붙임】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p>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부적정</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9. 1. 7. 일반경쟁입찰대상인 ‘스 구매’ (계약금액: 26,598천원) 물품 계약을 ■■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3월부터 2021. 4월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 계약 18건(계약금액 합계 1,060,694천원)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6명)</p> <p>○ 주의(2명)</p>

【붙임】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교정구분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1	성신	-	2019-01-07	26,598	-	-
2		-	2019-01-18	22,638	-	-
3		-	2019-02-25	27,423	-	-
4	성심	-	2018-11-01	110,000	-	-
5		-	2018-03-01	42,510	-	-
6		-	2019-03-01	89,635	-	-
7		-	2020-03-01	102,084	-	-
8	성의	-	2018-01-01	156,014	-	-
9		-	2018-01-01	60,752	-	-
10		-	2018-04-01	51,756	-	-
11		-	2018-05-24	22,440	-	-
12		-	2018-08-27	94,050	-	-
13		-	2018-12-13	77,000	-	-
14		-	2019-05-17	24,066	-	-
15		-	2019-07-02	57,510	-	-
16		-	2020-04-01	43,656	-	-
17		-	2021-04-01	24,950	-	-
18		-	2021-04-02	27,612	-	-
합계				1,060,694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p>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승인 실험 시행</p> <p>○ 「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실험지침」 제4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행할 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과 그 준수사항을 지켜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AR은(는) ‘○’ 연구과제를 수행(연구기간 2019. 8. 1. ~ 2020. 12. 31.)하면서 실험동물인 마우스에 ‘ㄷ’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고 2019. 8.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2020. 3. 27. 당초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실험과는 관련이 없는 신경외과학 연구진과 공동연구중인 별도 과제의 실험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실험동물 사용(대여)하는 등 【붙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승인 실험 현황’과 같이 위 AR 등 8명은 동물실험의 내용을 당초 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3명)</p> <p>○ 주의(5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 조치></p> <p>○ 통보(관련기관)</p>

【붙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승인 실험 현황

연번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실험대상동물	당초 위원회에서 승인된 실험내용 (승인일자)	위원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실험내용 (실험일자)
1	-	-	-	마우스	-	-
2	-	-	-	마우스	-	-
3	-	-	-	토끼	-	-
4	-	-	-	마우스	-	-
5	-	-	-	랫드	-	-
6	-	-	-	마우스	-	-
7	-	-	-	마우스	-	-
8	-	-	-	토끼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p>실험동물 출처 등 실태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매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1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실험동물연구실은 2021. 1. 28. JJ 부장관에게 ‘2020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을 통지하면서 【붙임】 ‘2019년 및 2020년 실험동물 공급출처 현황’과 같이 위 운영실적보고서 상의 ‘실험동물 공급출처’에 전년도 실태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마우스 27,007마리를 ‘기타’ 항목에 표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실험동물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관리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작성·통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붙임】

2019년 및 2020년 실험동물 공급출처 현황

(단위 : 마리)

동물 종	2019년						2020년					
	동물 실험 시설	실험 동물 공급자	해외 수입	자체 생산	기타	합계	동물 실험 시설	실험 동물 공급자	해외 수입	자체 생산	기타	합계
마우스	150	15,449	-	7,516	-	23,115	180	12,003	2,800	17,849	27,007*	59,839
랫드	-	5,377	-	187	-	5,564	-	3,677	555	-	-	4,232
기니 피그	-	5	-	-	-	5	-	-	-	-	-	-
토끼	-	96	-	-	10	106	-	10	115	-	-	125
개	-	8	-	-	3	11	-	-	1	-	-	1
돼지 (미니 돼지)	12	7	-	-	-	19	268	72	-	-	-	340
총계	162	20,942	-	7,703	13	28,820	448	15,762	3,471	17,849	27,007	64,53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p>산학협력단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및 채용서류 관리 소홀</p> <p>【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산학협력단은 2018. 3. 13. 공고된 5개 분야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평가 및 우대경력·자격증에 대한 배점기준 등 각 전형별 세부 평정방법과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 등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우대사항)’, ‘전형일정’, ‘면접위원’, ‘입사지원서(양식)’, ‘공고문’, ‘직원임용제청서’의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공개 채용요청의 건’이라는 내부 결재문서만을 품의해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 평가 시 ‘논리적 어휘구사력(+10점)’과 같이 평가자 주관에 따라 부여점수가 	<p>【①, 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① 관련】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상에 채용시험의 과목,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채용공고일 이전 각 전형별 세부 평정방법과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② 관련】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관련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달라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채용담당자 1인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p> <p>- 면접평정 시에는 ‘기본 질의응답(40점), 용모·태도(10점), 역량 및 잠재능력(50점)’ 등 3개 평가항목에 대해 각각 ‘상·중·하’ 평가하도록 평가표를 마련하였음에도 내부 평가자 3명 모두 응시자 총점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등 【붙임1】 “산학협력단 직원 공개채용 절차”와 같이 2018. 3.부터 2021. 10.까지 총 43건의 직원 채용에 있어 공고일 이전 세부 채용계획 수립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서류전형의 자기소개 평가를 확인자 없이 채용담당자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평정 시 각 응시자의 총점만을 기재 또는 ‘합격·불합격’ 여부만 표시하거나 해당부서장 1인이 단독으로 면접평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p> <p>【채용서류 관리 소홀 관련】②</p> <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을 기반으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을 기록 관리기준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가톨릭대학교 「문서관리 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실무 부서에서 보관하는 완결 문서는 연도 말 또는 회계연도 말마다 정리하며, 문서 보존연한표[별표]를 기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채용·퇴직’과 관련된 문서는 ‘준영구’의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는데도,</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산학협력단은 2018. 3. 13. 공고된 5개 분야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에 있어 면접평정서류 원본 및 퇴직한 합격자의 응시서류를 폐기하는 등</p> <p>【붙임2】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면접평정서류 및 퇴사한 합격자 응시서류 폐기 현황”과 같이 2018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의 직원 채용에 있어 면접 평정 서류의 원본과 퇴사한 합격자 응시서류를 각 폐기 한 사실이 있음</p> <p>※ 법령을 오해하여 원본서류를 폐기하였으나, 사본은 PDF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채용비리와는 관련성이 없음</p>	

【붙임1】

산학협력단 직원 공개채용 절차

※ 생략

【붙임2】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시 면접평정서류 및
퇴사한 합격자 응시서류 폐기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7	<p>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및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공정·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인센티브는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사업단 자체평가 기준 마련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단은 2차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객관적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2019. 2. 15. AS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인센티브 지급 현황”과 같이 2019. 2.부터 2020. 12.까지 객관적 자체평가 기준 없이 위 AS등 사업 참여 교·직원 97명(중복포함)에게 인센티브 합계 154,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C+사업단 참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단에서 객관적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급하시기 바람 <li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0;"><별도조치> ○ 통보(관련기관)

【붙임】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p>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등</p> <p>○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10조 및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내 연구활동 지원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지원과제별 해당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처에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고, 지원과제별 연구결과물은 연구과제 공모 요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1~2년 이내 또는 연구과제 개시 후 2~3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발표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 발표 기간 연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연구결과물 미제출】 -- ①</p> <p>- 가톨릭대학교 AT은(는) 2016년도 교내연구과제인 ‘ㄸ 연구’ (연구기간: 2016. 5. 1. ~ 2017. 4. 30., 지원액: 20,000천원)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기한(2019. 4. 30.)까지 제출하지 않은 등 【붙임1】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9. 4.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AT 등 교원 15명은 총 15개의 교내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 으로부터 최소 182일에서 최대 913일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연구결과물 지연 제출】 -- ②</p> <p>- 가톨릭대학교 AU은(는) 2015년도 교내연구과제인 ‘ㄷ 연구’ (연구기간: 2015. 5. 1. ~ 2016. 4. 30., 지원액: 20,000천원)을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인 2020. 4. 30.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경고(3명)</p> <p>○ 주의(12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경고(1명)</p> <p>○ 주의(4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③ 관련】</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도과 후 제출 기한을 연장·승인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371일이 지난 2021. 5. 6.에 제출하는 등 【붙임2】 “교내 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현황”과 같이 2019. 2. 부터 2021. 4.까지 위 AU 등 교원 5명은 총 5개 교내 연구 과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으로부터 최소 184일에서 최대 371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p> <p>【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승인 부적정】 -- ③</p> <p>- 가톨릭대학교는 AV이(가) 2016년도 교내 연구과제인 ‘트 연구’(연구기간: ‘2016. 11. 1. ~ ‘17. 10. 31., 지원액: 20,000천원)를 수행하면서 과제 종료일로부터 649일이 지난 2021. 8. 10.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등 【붙임3】 “교내 연구결과물 연구 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AV 등 교원 19명이 총 21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 종료일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649일이 지나 기한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연장을 승인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

※ 생략

【붙임2】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 지연제출 현황

※ 생략

【붙임3】

교내 연구결과물 연구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9	<p>교내 연구비 수령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수행을 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연구책임자가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표되어야 하고, 발표된 연구결과는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나 견해,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발전적 이해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구 제안서 혹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부적절한 연구계획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AW은(는) 2015. 7. 3. 인준된 제자 임상심리학전공 대학원생 AX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p>	<p>○ 경징계(8명)</p> <p>○ 통보</p> <p>- 기 지급된 연구비 합계 38,491,510원을 규정에 따라 검토 후 부당하게 지급된 연구비는 연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제목으로 2018. 3월 게재연구비를 신청(연구기간 : 2018. 3. 1. ~ 2019. 2. 28.)한 후, 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석사학위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12page로 정리)하여 2018. 11. 30. 교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하고, 2018. 12. 17. 게재연구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여 2019. 2. 22. 게재연구비 2,500천원을 지원받는 등 【붙임】 “제자논문 요약본 교내연구비 결과물 제출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위 AW 등 교수 8명은 제자 15명의 학위논문 15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으로 교내연구비(게재연구비 또는 일반연구비)를 신청하고 동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 후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합계 38,491,510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제자논문 요약본 교내연구비 결과물 제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p>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및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가톨릭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고, 연구 수행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한국연구재단)」 및 「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편람」에 따르면 회의비는 연구관련 회의 후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참여자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경고(5명)</p> <p>○ 주의(32명)</p> <p>○ 시정(회수)</p> <p>-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집행한 회의비 합계 11,857,925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관련기관)</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가톨릭대학교 AY은(는) “ㅎ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9. 11. 27. 국외출장(출국시각 11:05) 중임에도 같은 날 10:30부터 12:00까지 ‘ㄱ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ㄱㄱ(서울 소재)”에서 연구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56,000원에 대한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붙임】 “회의 미참석자 회의비 집행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9.까지 위 AY 등 교원 37명은 국가연구과제 등 교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외출장 등 해외 일정 중임에도 국내에서 실시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회의비 총 96건, 합계 11,857,925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회의 미참석자 회의비 집행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1	<p>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p> <p>○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하고,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발명의 내용 설명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고, 직무발명 결정 및 승계에 관한사항,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실시보상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경고(9명)</p> <p>○ 통보</p> <p>-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소멸건 제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주의(6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발명 미신고】 …… ①</p> <p>-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AZ은(는) 2012. 10. 2. 직무와 관련된 발명 ‘ㄷ’을(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등 【붙임1】 “직무 관련 발명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과 같이 2006. 1. 부터 2020. 5. 까지 위 AZ 등 9명은 15건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음</p> <p>【위원회 미심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 ②</p> <p>-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8. 2. 19. 직무발명심의 위원회의 심의 없이 BA의 직무발명인 ‘ㅁ’ 특허권을 ■■■에 기술이전(계약금액 25,000천원)하고 위 교수 BA에게 보상금 16,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 “위원회 未 심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21. 9. 까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 특허 등 총 162건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기술이전하고, 위 BA 등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 합계 1,022,057,181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

※ 생략

【붙임2】

위원회 未심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p>성적자료 미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및 「가톨릭대학교 학업성적평가 규정(2019. 12. 3. 제정)」 제5조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과목별 성적확인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답안지는 전공에서 자체 보관하며, 성적자료 보관연한은 최소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가톨릭대학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쓰’ 시험답안지를 2021. 10. 감사일 현재 보관(보존)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 “성적자료(시험답안지) 미보관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부터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606개(중복 포함) 교과목의 시험답안지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학교 성적자료 등을 기록물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보관·관리하기 바람

【붙임】

성적자료(시험답안지) 미보관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p>현장실습 운영 부적정</p> <p>【현장실습 협약 미체결】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17.3.1.)」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7)」에 따르면 반드시 학교의 장, 실습기관의 장, 학생이 포함된 3자 간 협약을 실시하여야 하고, 협약의 내용은 실습 기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관의 의무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는 2018학년도 하계학기에 실습기간, 장소 및 방법, 기관의 의무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3자 간(학교-실습기관-학생)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BB이(가) '■■■'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18. 6. 27. ~ '18. 8. 21.)에 참여하게 하는 등 【붙임 1】 “현장실습 협약 미체결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하계학기부터 2020학년도 하계학기까지 사전에 3자 간(학교-실습기관-학생)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 BB 등 학생 16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있음 <p>【현장지도 미실시】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제4항,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7)」에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따르면 대학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 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에서 현장 실습('18. 3. 2. ~ '18. 6. 30.)을 실시하고 있는 BC에 대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실습수행 상태 등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2】 “현장실습 현장 지도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하계학기까지 위 BC 등 현장실습생 548명(학기별 누적인원)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1】

현장실습 협약 미체결 현황

※ 생략

【붙임 2】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p>보강 미실시 및 강의료 수령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며 교과목의 이수능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원 학칙(가톨릭대학교)」 제45조에 따르면 수업일수, 휴업일 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하고, 「학칙(가톨릭대학교)」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하며, 「수업관리 규정(가톨릭대학교)」 제5조에 따르면 휴강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 이후 3주 이내에 보강 결과 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BD은(는) 2018학년도 1학기에 보건대학원에서 ‘xx’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에 공휴일에 2시수(3,4교시)를 편성하고 해당일자에 강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p> <p>【붙임1】 “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BD 등 교수 5명은 강의계획서에 공휴일 등을 사유로 총 20시수를 편성하고 해당일자에 강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강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5명)</p> <p>○ 시정(회수)</p> <p>- 실제 강의하지 않은 시수에 대한 강의료 합계 880,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받아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위 BD 등 교수 5명은 【붙임2】 “결강 시수 강의료 지급 현황”과 같이 실제 강의하지 않은 시수(20시수)에 대한 강의료 합계 8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붙임1】

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현황

※생략

【붙임2】

결강 시수 강의료 지급 현황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5	<p>교과목 강의계획서 미제출 등</p> <p>○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5조에 따르면 수업일수, 휴업일 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하며, 「가톨릭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과목별 담당 교·강사는 강의계획서에 주차별 수업 운영 계획, 강의방법, 성적평가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9조 및 「가톨릭대학교 수업운영 내규」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교수는 매학기 시작 전 담당하는 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BE는(은) 2018학년도 1학기에 ‘ㄱㄱ’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p> <p>【붙임】 “교과목 강의계획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현황”과 같이 위 교수 BE 등 370명(학기별 누적인원)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총 370개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1일 길게는 52일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강의계획서가 지정 한 기간 내에 학생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붙임】

교과목 강의계획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6	<p>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계약 부당 등</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가톨릭대학교 구매 계약 규정」 제4조 및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구매 계약 규정」 제4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p>	<p style="text-align: right;">【① 관련】</p> <p>○ 경징계(4명)</p> <p>○ 경고(2명)</p> <p style="text-align: right;">【①, ③ 관련】</p> <p>○ 경고(1명)</p> <p style="text-align: right;">【①, ②, ③ 관련】</p> <p>○ 경징계(2명)</p> <p>○ 경고(1명)</p> <p style="text-align: right;">【② 관련】</p> <p>○ 경고(4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p> <p>【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 ----- ①</p> <p>-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은 2019. 2. 20. 예정가격이 187,000천원으로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그ㄴ용역(계약금액 170,000천원, 용역기간 ‘19.2.20.~’25.2.28.)“을 ◆◆와(과)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1】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등 7개 기관은 2017. 11.부터 2021. 4. 까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위 ‘그ㄴ용역’ 등 총 22건의 용역 및 공사(계약금액 합계 9,076,228천원)를 ◆◆ 등 총 14개 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p> <p>【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지명경쟁입찰】 ②</p> <p>-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2018. 12. 10. 예정가격이 1,035,903천원인 “그ㄷ공사“(계약금액 1,035,903천원, 공사기간 ‘18.12.20.~’19.2.20.)를 입찰공고하면서 일반 크랙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등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대상자가 10인을 초과하여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데도 지명경쟁입찰(4개업체 참여)로 공고하여 2018. 12. 20. ◎◎와(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2】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지명경쟁입찰 현황“과 같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등 3개 기관은 2018. 6.부터 2021. 7.까지 위 “그ㄷ공사” 등 시설공사 총 8건(계약금액 합계 7,523,569천원)을 입찰공고하면서 일반 크랙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등</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이므로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등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대상자가 10인을 초과하여 일반경쟁 입찰 대상 공사인데도 지명경쟁입찰로 공고하여 ○○ 등 총 6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p> <p>【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분할계약】 ---- ③</p> <p>-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2020. 12. 21. 추정가격이 17,500천원인 “ㄱㄴ 설계용역(계약금액 17,500천원, 용역기간 ‘20.12.21~’21.3.16.)“을 계약하면서 같은 날 ㄷㄷ와(과) 추정가격이 15,000천원인 “ㄱㄹ 설계용역(계약금액 15,000천원, 용역기간 ‘20.12.21. ~’21.2.4.)“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분할계약 체결현황“과 같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및 성빈센트병원은 2018. 8.부터 2020. 12.까지 일반용역이므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거나 동일 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 위 “ㄱㄴ 설계용역“ 등 총 2건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공사를 5건(계약금액 합계 5,761,816천원)으로 분할하여 수의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계약명	계약일	용역 또는 공사기간	계약금액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대표자)	수의계약 추진사유	계약 담당자 (팀장)
1	성의 교정	-	2019.2.20.	2019.2.20. ~ 2025.2.28.	170,000 (187,000)	-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	-
2	성의 교정	-	2020.5.28.	2020.5.28. ~ 2022.2.28.	296,000 (296,000)	-	-	-
3	성의 교정	-	2020.5.28.	2020.5.28. ~ 2022.2.28.	190,000 (190,000)	-	-	-
4	성심 교정	-	2021.4.16.	2021.4.16. ~ 2021.6.30.	796,400 (796,400)	-	인접부지 시공업체와 계약	-
5	의료원	-	2018.3.28.	2018.3.28. ~ 2018.6.28.	220,000 (220,000)	-	-	-
6	서울 성모 병원	-	2018.10.31	2018.11.1. ~ 2018.12.31.	749,500 (799,480)	-	1차 입찰후 수의계약	-
7	서울 성모 병원	-	2020.7.9.	2020.8.1. ~ 2020.8.28.	199,900 (218,680)	-	-	-
8	여의도 성모 병원	-	2018.4.1.	2018.4.1. ~ 2018.5.2.	133,500 (116,000)	-	1차 입찰후 수의계약	-
9	여의도 성모 병원	-	2018.5.4.	2018.5.8. ~ 2018.6.10.	321,000 (330,000)	-	1차 입찰후 수의계약	-
10	여의도 성모 병원	-	2018.7.16.	2018.7.16. ~ 2018.8.31.	151,000 (151,000)	-	1차 입찰후 수의계약	-
11	여의도 성모 병원	-	2018.10.18	2018.10.20. ~ 2018.11.30.	525,000 (510,000)	-	1차 입찰후 수의계약	-

연번	기관명	계약명	계약일	용역 또는 공사기간	계약금액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대표자)	수의계약 추진사유	계약 담당자 (팀장)
12	여의도 성모 병원	-	2019.3.4.	2019.3.4. ~ 2019.3.31.	97,000 (97,000)	-	기존 시공업체와 계약	-
13	여의도 성모 병원	-	2020.1.9.	2020.1.9. ~ 2020.3.31.	566,000 (570,000)	-	기존 시공업체와 계약	-
14	여의도 성모 병원	-	2020.3.13.	2020.3.13. ~ 2020.5.31.	801,570 (801,570)	-	기존 시공업체와 계약	-
15	부천 성모 병원	-	2017.11.20	2017.11.20. ~ 2018.5.31.	400,000 (400,000)	-	인접건물 설계업체와 계약	-
16	부천 성모 병원	-	2018.5.31.	2017.11.20. ~ 2018.11.30.	872,000* (872,000)	-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	-
17	부천 성모 병원	-	2020.4.13.	2017.11.20. ~ 2020.11.30.	1,320,000* (1,320,000)	-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	-
18	부천 성모 병원	-	2021.4.8.	2021.4.19. ~ 2021.5.15.	183,858 (260,000)	-	-	-
19	성 빈센트 병원	-	2018.3.12.	2018.3.12. ~ 2018.11.30.	128,000 (128,000)	-	-	-
20	성 빈센트 병원	-	2018.5.18.	2018.5.18. ~ 2019.2.28.	489,500 (489,500)	-	-	-
21	성 빈센트 병원	-	2018.8.30.	2018.8.30. ~ 2018.12.28.	168,000 (168,000)	-	-	-
22	성 빈센트 병원	-	2018.9.1.	2018.9.1. ~ 2018.11.30.	298,000 (298,000)	-	-	-
합 계			-	-	9,076,228 (9,218,630)	-	-	-

【붙임2】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지명경쟁입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계약명	입찰 공고일 (입찰참가 업체수)	계약일	공사(용역) 기간	계약금액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대표자)	계약담당 자 (팀장)
1	성심 교정	-	2018.12.10. (4개)	2018.12.20.	2018.12.20. ~ 2019.2.20.	1,035,903 (1,035,903)	-	-
2	성심 교정	-	2019.3.11. (3개)	2019.3.28.	2019.4.1. ~ 2020.2.24.	335,000 (600,000)	-	-
3	성 빈센 트 병원	-	2018.6.25. (3개)	2018.8.25.	2018.8.25. ~ 2018.12.31.	799,739 (799,739)	-	-
4	성 빈센 트 병원	-	2018.6.25. (3개)	2018.8.25.	2018.8.25. ~ 2018.12.31.	4,438,682 (4,438,682)	-	-
5	성 빈센 트 병원	-	2018.6.25. (3개)	2018.8.25.	2018.8.25. ~ 2018.12.31.	490,895 (490,895)	-	-
6	성 빈센 트 병원	-	2021.7.23. (3개)	2021.7.29.	2021.7.29. ~ 2021.8.25.	161,000 (161,000)	-	-
7	대전 성모 병원	-	2019.3.2. (2개)	2019.3.11.	2019.3.11. ~ 2019.3.28.	132,000 (132,000)	-	-
8	대전 성모 병원	-	2020.6.1. (2개)	2020.6.15.	2020.7.15. ~ 2020.7.15.	130,350 (130,350)	-	-
합 계			-	-	-	7,523,569 (7,788,569)	-	-

【붙임3】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및 공사 분할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공사명	해당건물	계약요청 금액	계약일 (계약요청일)	계약 금액	계약 업체	계약 방법	계약 담당자 (팀장)
1	성심 교정	-	-	17,500	2020.12.21. (2020.11.3.)	17,500	-	수의	-
	성심 교정	-	-	15,000	2020.12.21. (2020.12.2.)	15,000		수의	-
2	성 빈센트 병원	-	-	4,438,682	2018.8.25. (2018.8.14.)	4,438,682	-	지명 경쟁	-
	성 빈센트 병원	-	-	799,739	2018.8.25. (2018.8.14.)	799,739		지명 경쟁	-
	성 빈센트 병원	-	-	490,895	2018.8.25. (2018.8.14.)	490,895		지명 경쟁	-
합 계				5,761,816	-	5,761,816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7	<p>시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 관리 소홀</p> <p>○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2020. 2. 26. 〰〰〰와(과) 계약한 “그리 공사(계약금액 1,593,000천원, 공사기간 ‘20.2.26.~’22.1.3.)”를 관리·감독하면서 해당공사 현장 건설기술인으로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 BF이(가) 매일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함에도 매주 2~3차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는데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p>	<p>○ 경고(2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부)</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현장 건설기술인의 현장 미상주(이탈)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도급금액 5억원 이상 공사는 중급기술자 배치</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8	<p>시설공사 착공서류 미수령</p> <p>○ 「가톨릭대학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부천성모병원 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인천성모병원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가톨릭대학교는 2018. 9. 10. 〰〰〰(과) 계약한 “기공사” (계약금액 138,900천원, 공사기간 ‘18.9.10.~’18.10.31.)를 2018. 9. 10. 착공하면서 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공사공정예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착공계 미제출 공사현황”과 같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부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은 2018. 8.부터 2021. 9.까지 위 “기공사” 등 공사 12건(계약금액 합계 6,215,140천원)을 착공하면서 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공사공정예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기 전 기술자 지정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기 바람</p>

【붙임】

시설공사 착공계 미제출 공사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명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공사업체 (대표자명)	공사 담당자
1	성심 교정	-	138,900	2018.9.10	2018.9.10.	2018.10.31.	-	-
2	성심 교정	-	55,100	2020.2.17	2020.2.17.	2020.2.26.	-	-
3	부천 성모 병원	-	400,000	2018.8.10.	2018.8.10.	2018.9.30.	-	-
4	부천 성모 병원	-	54,400	2018.5.25.	2018.5.28.	2018.7.20.	-	-
5	부천 성모 병원	-	2,841,600	2019.6.15.	2019.6.15.	2019.11.30.	-	-
6	부천 성모 병원	-	76,340	2020.3.27.	2020.3.27.	2020.5.20.	-	-
7	부천 성모 병원	-	95,700	2021.9.9.	2021.10.15.	2021.11.11.	-	-
8	인천 성모 병원	-	91,300	2018.9.7.	2018.9.10.	2018.9.30.	-	-
9	인천 성모 병원	-	952,600	2018.10.29.	2018.11.1.	2019.3.31.	-	-
10	인천 성모 병원	-	194,700	2019.4.1.	2019.4.3.	2019.5.10.	-	-
11	인천 성모 병원	-	836,000	2020.8.27.	2020.9.1.	2022.8.30.	-	-
12	인천 성모 병원	-	478,500	2021.6.16.	2021.6.25.	2021.10.31.	-	-
합계			6,215,140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가톨릭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9	<p>물품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가톨릭대학교 물품관리 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처 관리과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 등록과 동시에 물품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물품관리 관련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증 물품을 물품관리목록에 등록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1988년 BG 작가로부터 서예 작품을 기증받았음에도 수증 물품을 물품관리목록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붙임】 “미술품 미등록 현황”과 같이 1988.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서예 작품 등 기증이나 작품제작의뢰 등을 통해 취득한 글씨 및 그림 등 미술품 총 110점(취득가액 97,122천원)을 물품관리목록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거나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 향후 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미술품 미등록 현황

※ 생략